

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7(월)  
발의자 : 심현정 의원  
찬성자 : 이주웅, 장문혁  
박찬원, 지광천  
이명순 의원

## 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심사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 심 사 계 획

## 1. 활동목적

-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
-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

## 2. 심사안건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## 3. 활동기간

-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한다.

## 4. 구 성

- 이주용 의원, 장문혁 의원, 박찬원 의원, 지광천 의원, 이명순 의원,

## 5. 운영계획

일시	차 수	내 용	비 고
9.14 (월)	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1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</li> <li>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</li> <li>3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요설명(기획실장)</li> <li>○ 검토보고(전문위원)</li> <li>○ 계속비사업(기획실장)</li> <li>○ 세입예산(재무과장)</li> <li>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회사무과, 기획실, 읍·면, 행정과</li> <li>- (행정지원국)</li> <li>· 복지과(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), 민원과, 재무과, 허가과, 교육체육과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ol>	
9.15 (화)	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경제건설국)</li> <li>· 문화관광과,</li> <li>· 일자리경제과(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,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)</li> <li>· 환경위생과(수질개선특별회계), 산림과, 안전건설과, 도시과, 시설관리과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ol>	

일시	차 수	내 용	비 고
9.16 (수)	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1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- (보건의료원) · 보건사업과, 진료지원과 - (농업기술센터) · 농업축산과, 유통원예과, 기술지원과 - (상하수도사업소) · 상하수도사업소(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)	
9.17 (목)	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1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예산안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	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### □ 평창군의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